

2020년도 제2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9. 24.(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심장섭,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210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14건(안건번호 제2020-123705호~12426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23705호, 123706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단, 안건번호 제2020-123706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전송 중단된 상태이므로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123707호~123709호는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0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1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의 저작물명, 파일명, 6쪽의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D,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미국 HBO', '(주)한글과컴퓨터', 'MAGIX.', '영국 Sky One, 'MBN', '일본 후지 TV',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Netflix', '소니픽쳐스', '미국 LIFETIME', '미국 Showtime', '미국 Cinemax', '미국 CWTV',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C, D, B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11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23705호~124262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3705호, 123706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 ‘☆☆☆ ☆☆☆’ 한 화 전체 분량을 각 전송 중임. 총 7개의 게시물임. 심의 직전 심의대상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제2020-123706호는 현재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임.

(안전번호 제2020-123705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 ‘☆☆☆ ☆☆☆ ☆’ 24화를 무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3분 50초를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123706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입니다”이라는 창이 뜬.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더 이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지 않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23705호, 12370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안전번호 제2020-123705호, 123706호는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단, 안전번호 제2020-123706호는 현재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므로 부결 의견임.
- B 위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단, 현재 삭제된 게시물은 부결 의견임.

- C, D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3706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2370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3707호~123709호는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설 '☆☆☆☆☆☆☆☆☆☆ ☆☆☆ ☆☆☆ ☆☆☆ ☆☆☆', '☆ ☆☆☆ ☆☆☆ ☆☆☆', '☆☆☆ ☆☆☆☆ ☆☆☆☆☆'를 무료 내지 30 포인트에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3개의 게시물임.
(제2020-123707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1화부터 350화, 외전을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카카오페이지에서 1화당 100원에 판매중이며, 12시간 마다 무료로 구독 가능함.
- D 위원: 카카오페이지에 가입 후 1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5화를 읽은 후, 12시간 후인 오후 10시에 6화를 무료로 읽을 수 있음. 만약 오후 10시 이전에 6화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100원을 결제해야 함.

- B 위원: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여겨짐.
- 성원영 전문위원: (제2020-123708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30 포인트에 판매중임. 1화부터 200화까지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지에서 1화당 100원에 구매 가능함.
(제2020-123709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1화부터 50화까지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카카오페이지에서 1화당 100원에 판매중이며, 12시간 마다 무료로 구독 가능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23707호~12370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D, A 위원: 같은 생각임.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3707호~12370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3710호~12426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SW '한컴오피스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392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한컴오피스 2020'을 무료로 제공중임. '한글2020' zip 파일로 제공함. 저작권사 '(주)한글과컴퓨터'임. 자동인증이 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매월 63,800원에 이용 가능함.

- D 위원: 검토보고서 상 저작물명은 '한컴오피스 2014 ~ 2020'으로 되어 있는데?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 온라인대응팀에서 모니터링하여 저작물명

을 세팅함. 한컴오피스 2014 버전부터 2020 버전까지 하나의 카테고리 묶어서 임의로 분류함. 심의에 올라오는 것은 2~3년 내에 출시된 최신 저작물이 대부분임.

(영화 '물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3935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물란'을 320 캐시에 판매중임.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0.9. 17.에 개봉함. 유역비, 이연걸, 공리, 전자단 등이 출연하였으며, 2020 9. 20. 기준 누적관객수 152,044명임. 무예에 남다른 재능을 지닌 '물란'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들 몰래 전장에 나가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는 어드벤처 액션 영화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396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160 포인트에 판매중임.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0. 8. 5.에 개봉함. 황정민, 이정재, 박정민 등이 출연하였으며, 2020 9. 20. 기준 누적관객수 4,350,438명임. 청부살인 미션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황정민과 그를 쫓는 무자비한 추격자 이정재의 처절한 추격과 사투를 그린 하드보일드 추격액션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6,390원 구매, 11,000원 대여 가능함.

(음악 'When We Disco'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4032호는 음악 'When We Disco'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100포인트에 판매중임. '2020년 09월 13일 TOP 100(320k).egg' 파일로 제공함. 2020. 8. 12. 발매하였으며, 가수는 '박진영, 선미'임. 2020. 9. 20. 기준 멜론 차트 6위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23710호~12426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D, C,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123710호 ~124262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3710호~12426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3706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23705호, 제2020-123707호~12426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2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8.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